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
110-73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(세종로, 광화문빌딩)
사무국:(02)399-4308~21 FAX:(02)399-4323
대표자 이사 전 용 재

Foundation of Juridical Person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
(Gwanghwamun Building, Sejong-ro), 149, Sejong-daero,
Jongno-gu, Seoul, Korea 110-730
TEL:82-2-399-4308~21 FAX:82-2-399-4323
Bishop Jun, Yong Jai President

「 오늘의 혁신, 내일의 희망 」

문서번호 감재제 15623호
시행일자 2015. 7. 8 .
수 신 각 교회 담임자
참 조 관리부장, 재무부장
제 목 주민세(재산분) 자진신고에 대한 안내

1.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2. 그 동안 귀 교회에서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(사업장)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전액 면제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었습니다.(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0조 제3항)

3. 하지만, 올해부터 교회 예배처소 및 부속건물<전,월세교회도 포함> (종전 주민세를 면제 받아왔던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로써 예배당, 사택, 교육관, 주차시설 등 모두 포함하여 합계 **총 면적이 330㎡를 초과**하는 경우)에 대해 주민세 면제에 따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(20%)를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.(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개정)

4. 따라서, 본 재단에서는 면제되는 주민세(재산분)에 대한 자진신고의 부당함을 행정자치부에 시정요청하였으나,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다음과 같은 신고를 안내하니 귀 교회에서는 유념하시어 별지1.에 따른 신고양식에 따라 관할 시,군,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신고 기간 : 매년 7월 1일 ~ 7월 31일
- 신고 대상 :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예배처소 및 부속 건물들의 **총면적이 330㎡ 초과**하는 경우 (목사관, 교육관, 주차시설, 전.월세 교회 등 모두 포함)
- 신고 서류 : 별지1.양식
- 문의 기관 : 해당 관할 시, 군, 구청 세무(정)과

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
대표자 이사 전 용 재